

광주지방법원 2021. 7. 15 선고 2020나62661 판결 [사해행위취소 등]

재판경과

광주지방법원 2021. 7. 15 선고 2020나62661 판결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. 7. 21 선고 2017가단73027 판결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이민아

피고, 피항소인 1. B

2. C

3. D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(유한) 바른길 담당변호사 김용일

변 론 종 결 2021. 6. 17.

판 결 선 고 2021. 7. 15.

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. 7. 21. 선고 2017가단73027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 B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. 9. 21. 체결된 매매계약을 75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 C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3,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 각 2015. 9. 21.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75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 D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5,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. 12. 8. 체결된 매매계약을 75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,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제2항과 같이 추가판단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 중 ‘임대차들’를 ‘임대차가’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 제7면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.

『설령 자산초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,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는바, 채권자인 원고가 앞서 본 적극재산의 산정시기나

시가에 관하여 다투면서도 이 사건 각 매매 당시를 기준으로 한 적극재산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지 않고 별지 목록 제5, 6항 기재 부동산 및 순천시 M, L, 순천시 N, O 소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므로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매매 당시 채무자인 E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』

2. 추가판단

원고는 이 사건 제1, 2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하나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선희, 판사 김평호, 판사 김혜진

별지